

서울특별시 시정개발연구원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811
------	-----

2012. 6. 22.  
재정경제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2년 6월 8일

나. 제안자 : 서울특별시장

다. 회부일자 : 2012년 6월 12일

라. 상정일자 :

【서울특별시의회 제238회 정례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2012년 6월 21일)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서울특별시의회 제238회 정례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2012년 6월 22일)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시민과 소통·공감하며 도시정책을 선도하는 시정개발연구원에 대해 그 명칭을 서울연구원으로 변경하여 서울을 연구하는 전문기관으로 상징적 이미지를 부여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본어 식 또는 어문 규정에 맞지 않는 표현을 우리 어문규정에 맞게 다듬어 일반 시민이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나. 주요내용

- 제명 “서울특별시시정개발연구원육성조례”를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육성 조례”로 변경함(안 제명)
- 재단법인 서울특별시시정개발연구원을 재단법인 서울연구원으로 그 명칭을 변경함(안 제1조 및 제2조제1항)

##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2) 조직담당관(위원회) : 해당 없음
  -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협조 완료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 제외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 동의

○ 기 타

(1) 입법예고 (2012.5.3 ~ 2012.5.23) 결과 : 의견 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3) 비용추계 등 자료 : 미첨부사유서 첨부

### 3.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박노수)

#### 가. 개요

- 동 개정안은 시정개발연구원의 명칭을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재단법인 서울연구원”으로 변경하여 도시정책을 선도하는 글로벌 종합연구기관의 성격에 걸 맞는 명칭으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표현과 용어의 정비를 하려는 것임.

#### 나. 입법취지 및 타당성

- 시정개발연구원은 서울시가 출연한 도시정책 종합연구소로 1992년 출범한 뒤 다양한 서울의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등 시정을 뒷받침하는 연구소로서 큰 역할을 해왔으나, 서울시가 요구하는 사안을 일방적으로 연구하다보니 자율성과 독립성을 살리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음.
- 이에 연구원 개원 20주년을 맞이하여 변화된 시대상을 선도하는 연구원으로 재탄생하기 위해 ‘서울연구원’으로 개명하려는 것임. 이는 서울시 정책뿐만 아니라 미래사회 발전에 관한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정책 컨설팅 및 전문가 교육 등 연구원의 활동을 다양화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 다. 연구원의 명칭 변경

- 연구원의 명칭변경에서 ‘시정(市政)’이라는 명칭을 빼는 것은 서울시 정책에 얽매이지 않고 연구 중심에 초점을 두고 연구범위를 확대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개발(開發)’이라는 명칭을 빼는 것은 성장뿐 아니라 성장 이후를 대비하고, 건설이나 토건 분야와 같은 하드웨어적인 의미에서 시민 삶의 질과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면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또한, 타 기관의 명칭변경에서도 ‘개발’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 것은 시대적 추세라 할 수 있겠음. 다만, 명칭을 변경하기 전에 시민들에게 이를 널리 알리고 공모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절차가 생략된 것은 아쉬운 점이라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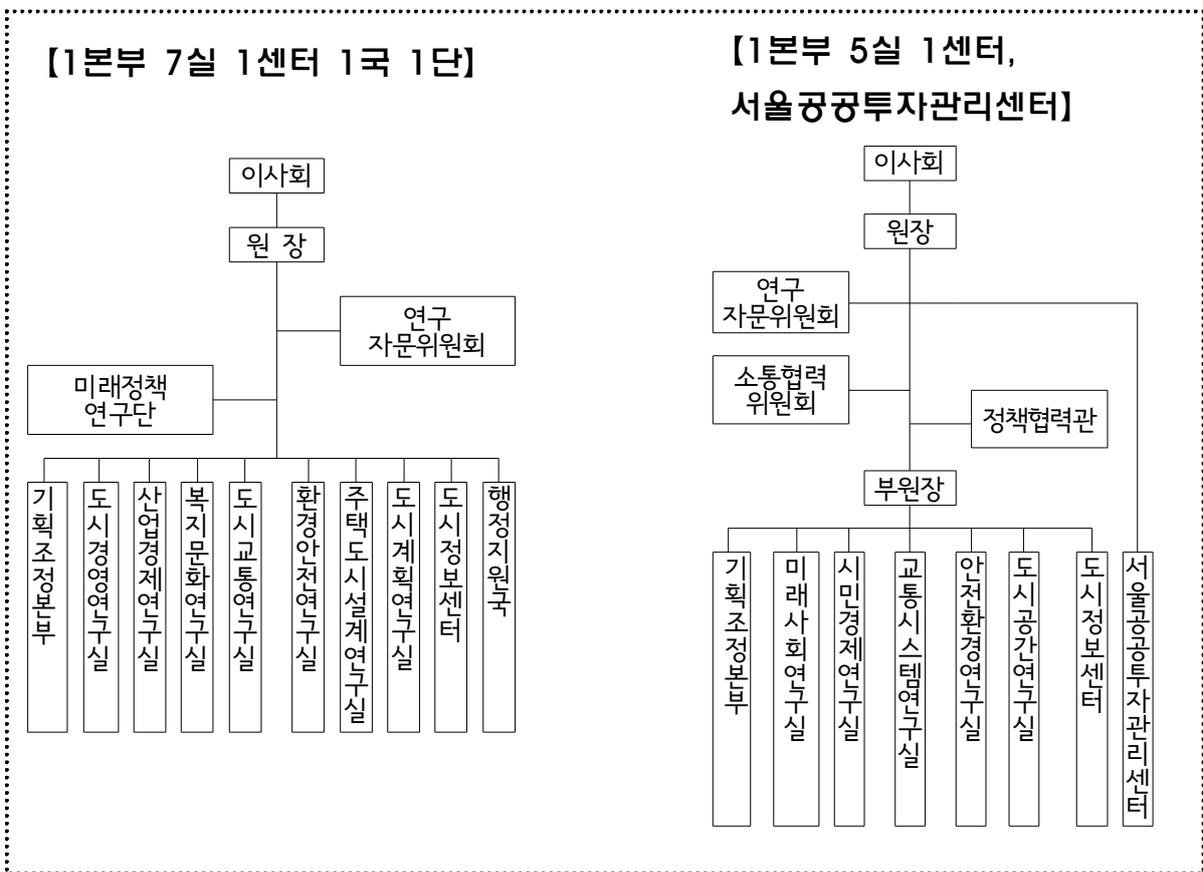
### < 타기관의 명칭변경 사례 >

변경전	변경후
국토개발연구원	국토연구원
교통개발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충북개발연구원	충북발전연구원

- 아울러, 최근 연구원은 ‘시민소통협력위원회’를 신설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연구에 최대한 담기 위해 조직을 개편(1본부 7실 1센터 1국 1단에서 ⇨ 1본부 5실 1센터, 공공관리센터) 한 바 있음.

- 이는 연구원의 명칭 변경과 더불어, 현안에 머물지 않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서울의 경쟁력과 서울시민 삶에 주력하기 위해 개방형 연구 플랫폼을 만들기 위한 틀(Framework)로 이해되며, 연구원의 미래 지향적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겠음.

< 시정개발연구원의 조직개편안 >



- 한편, 안 제8조 및 제9조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미흡한 일부 조항을 정비기준에 맞도록 입법 기술적으로 정리한 것임.

## 5. 질의 및 답변요지

○ 시정개발연구원의 직제개편이 언제 개편되었는가?

- 답변 : 최근에는 2009년도와 2011년도에 직제변경이 있었음.

○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직제개편이전에는 사회, 복지, 의료, 건강 등과 같은 직제가 있었는데 2011년 이후 의료, 건강분야의 직제가 '복지'로 통합된 것으로 나와 있음. 의료분야에 대한 조직신설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직제개편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은 이유는?

- 답변 : 이전에는 분야별로 다양하게 직제를 세분화하였으나, 2011년도 직제개편을 시행하면서 세분화되었던 직제를 통합 정비한 것임.

##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

○ '서울연구원'으로 막연하게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에는 동의하기 어려우므로 표결할 것을 제안함.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7명 거수표결, 찬성 5명, 반대 2명)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시정개발연구원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시정개발연구원육성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시정개발연구원육성조례”를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육성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시정개발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서울연구원”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연구원”을 “서울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조 중 “지득한”을 “알게 된”으로,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를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

제9조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서울특별시 규칙”을 “시행규칙”으로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서울특별시시정개발연구원”을 “서울연구원”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시정개발연구원”을 “서울연구원”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시의회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3호 마목 중 “시정개발연구원”을 “서울연구원”으로 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서울특별시시정개발연구원육성조례</u>	<u>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육성 조례</u>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대 도시화에 따른 도시문제와 서울특별시 행정에 필요한 제반정책과제를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u>서울특별시시정개발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u>을 보호, 육성함으로써 서울특별시의 행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u>서울연구원</u>----- ----- -----</p>
<p>제2조(기금) ① <u>연구원</u>의 시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기금을 설치한다.</p> <p>② (생략)</p>	<p>제2조(기금) ① <u>서울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u>-----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8조(비밀엄수의 의무) 연구원의 임원 및 직원이나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u>지</u> <u>득한</u> 비밀을 누설하거나 <u>도용하여서는 아니</u> <u>된다.</u></p>	<p>제8조(비밀엄수의 의무) ----- ----- <u>알</u> <u>게 된</u> ----- <u>해서는</u> <u>아니 된다.</u></p>
<p>제9조(시행규칙) 기금 및 출연금의 운용관리, <u>기</u> <u>타</u>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서</u> <u>울특별시 규칙</u>으로 정한다.</p>	<p>제9조(시행규칙) ----- <u>그 밖에</u>----- <u>시행규칙</u>-----</p>